

# 2017년 범죄심리사 1급 자격심사 안내문

## 1. 서류 제출 기간 및 접수처 안내

---

◆ 제출기간 : 2017년 04월 17일(월) ~ 04월 28일(금) 18:00

◆ 접 수 처 : (140-742)

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(청파동 2가 숙명여자대학교)

순헌관 721호 김민지 교수님(범죄심리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)

※ 서류봉투 겉면에 “범죄심리사 자격관리 위원회” 와 “범죄심리사 1급 심사서류 재  
중” 반드시 기재

- \* 꼭 제출기한 내에 본 기관이 서류를 수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.
- \* **제출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**
- \* 서류를 보내시기 전에 모든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2.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

---

### 1)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에 가입

- 한국심리학회 <http://www.koreanpsychology.or.kr/>

(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분과학회(사회및성격)도 가입 가능)

- 두 학회 모두 준회원 이상 가입

- **서류 제출 시, 학회비 입금 확인증 필히 동봉(계좌이체 내역, 카드결제 영수증도 인정)**

- **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심사 불가**

### 2) 이력서 1부 (특히 **영문이름, 핸드폰 번호, 주소,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**, 사진부착)

### 3) 최종학력증명서(현재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)와 성적증명서

최종학력증명서 : 심리학 학위 기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.

**성적증명서** : 범죄심리사 1급 교육 80시간 외에 20시간의 면제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목명이 상세히 나온 것을 첨부

- 면제과목시간은 필히 20시간 이상 이수(과목 중복인정 불가)

\* 면제대상과목(인정시간) : 범죄심리학(6), 법심리학(6), 사회심리학(6), 심리평가(6)

상담심리학(6), 성격심리학(3), 발달심리학(3), 이상심리학(3),

임상심리학(3), 범죄학(3), 법학개론(3), 형사정책(3)

#### 4) 범죄심리사 1급 교육 이수증 (교육 영수증 또는 수료증 원본)

#### 5) 수련수첩

- 수련수첩에 실습, 수련 내용 기재 불가한 경우, 별도의 용지에 내용 기재하여 제출

예) 수련수첩상의 기록지를 한글 파일 또는 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한 경우 인정

- 수련내용기록지 및 현장실습확인서는 실습기관별로 1부씩 모두 있어야 함

예) A 경찰서, B 경찰서, C 교도소에서 실습 한 경우,

A기관에서 확인한 현장실습확인서 1부, A기관 실습에 대해 지도받은 수련내용기록지 1부

B기관에서 확인한 현장실습확인서 1부, B기관 실습에 대해 지도받은 수련내용기록지 1부

C기관에서 확인한 현장실습확인서 1부, C기관 실습에 대해 지도받은 수련내용기록지 1부

- 모든 수련내용기록지는 직접 받은 감독자 날인이 있어야 함

- 모든 현장실습확인서는 직접 받은 기관책임자 날인이 있어야 함

#### 6)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모두 CD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(출력본은 심사불가)

예) A 경찰서, B 교도소에서 실습 및 수련한 경우,

폴더 **2개**(A경찰서, B교도소)

각 폴더(기관)별로 파일명 작성: 면담날짜\_대상자명 (예, 20100507\_홍길동)

\* 반드시 도장 혹은 서명 첨부

\* CD 오기록 및 오작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원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#### 7) 학회참석시간

1)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20시간 이상 참석

학회의 성격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은 아래와 같음

- ①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 학술대회 : 전일-6시간, 반일-3시간
- ② 한국심리학회 이외의 범죄관련 학회 : 전일-4시간, 반일-2시간
- 2) 학회참석 영수증 또는 학회참석 확인증은 반드시 **원본 제출(영수증 반환 불가)**
- 3) 다른 자격과정과 중복인정 불가(ex. 상담심리사 등)**
- 4) 워크샵, 사례 발표회, 연수 평점표는 인정하지 않음.

### 8) 범죄심리사 자격심사 신청서

수련수첩 원본 제출 혹은 출력본 제출 모두 인정.

본인 및 감독자의 도장 혹은 서명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.

## 3. 주의사항 및 기타

---

### 1) 현장 실습 및 수련시간 계산 방법

#### ① 현장실습

경찰서에서 실시하는 비행성 예측 업무 이외에 보호관찰소 등 공공기관, 상담소, 연구기관, 병원 등에서 범죄와 관련된 비행청소년, 피해자, 범죄자들을 상담하고, 기관에서 봉사한 모든 경우를 실습에 포함. 기관 1일 방문 시 8시간 인정

#### ② 수련

경찰서를 비롯한 실습기관에서 비행위험성 평가나 상담한 사례 중 범죄심리전문가 혹은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에게 수퍼바이징 받은 시간. 1사례 당 4시간 인정

- 아래의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 수련을 하신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#### 1.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
-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
- ② 범죄관련영역에서 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
-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
-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

#### 2. 범죄심리분야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
-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- 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
-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
-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

3. 범죄심리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
- ①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- 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
-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
-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

4. 범죄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
- ①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(연 400시간 이상)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
-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-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
-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

\* 범죄관련, 범죄심리 관련 영역 : 범죄관련 실습기관인 교정기관, 범죄수사기관, 범죄예방기관, 등 범죄관련 영역과, 사회심리, 성격심리, 상담심리, 임상심리, 발달심리 분야 등을 말하며, 기타 분야는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.

◎ 서류 양식

수련 수첩에 있는 관련 서류 양식이 부족한 경우, 수련수첩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범죄심리사 클럽 자료게시판에 있는 관련서류 양식들을 프린트하여 사용

◎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**인준료**는 합격한 사람에 한해 개별 공지

◎ 기타 **문의사항**은 아래의 이메일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범죄심리사 자격관리 위원회 이메일 : [crime2008@hanmail.net](mailto:crime2008@hanmail.net)